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제26회 임시이사회 회의록

2016. 10. 5(수) 07:30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Seoul Scholarship Foundation

제26회 임시 이사회

- 일 시 : 2016년 10월 5(수) 07:30
- 장 소 : 달개비(중구 정동)
- 재적이사 : 11명, 재적감사 : 2명
- 출석이사 : 8명
- 출석감사 : 1명

○○○ 이사장이 제26회 임시이사회회의 개최를 선언하다.

○○○ 부장이 제26회 임시이사회회의 성원을 보고하다.

○○○ 이사장이 인사말에 이어 안건을 간단히 설명하고, ○○○ 부장이 미리 배포된 회의자료를 통하여 주요보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다.

보고안건 1. 전차 이사회 회의보고

2. 당연직 임원변경 보고
3. 이사 사임에 관한 보고

1) ○○○ 이사 사임에 관한 내용 보고

4.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보고

1) 장학금 지원목적 관련 내용 개정(제1조)에 대하여 보고하다.

2) 용어의 정의 관련 내용 개정(제2조)에 대하여 보고하다.

3) 장학재단 사업수행 범위 개정(제5조)에 대하여 보고하다.

4) 장학금 지급 대상을 현재의 기준에 맞도록 개선 및 확대 개정(제6조)에 대하여 보고하다.

5) 서울장학재단 출연시 사업의 타당성 및 출연의 적정성 검토규정 신설(제16조) 보고

및 향후 추진일정을 보고하다.

5. 서울장학재단 운영사항 보고

보고사항이 완료되어 이사장이 다음 안건에 관하여 심의를 구하다.

제131호 정관 일부개정에 관한 건

이사장은 제131호 정관 일부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제131호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어 그와 관련하여 서울장학재단 정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함을 설명하다. ○○○ 부장이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정관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번 에 정관의 목적(제1조)과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제5조)에 대한 부분을 개정 하고자 설명하다.

○○○ 이사가 정관 개정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장학재단에 있는지 묻다.
○○○ 부장이 장학재단은 이사회 승인하고 교육청에 보고하기 전에 시의회(상임위원회)에 공문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 이사가 제5조 법인 공여이익 수혜자 중 '수혜자'의 용어를 '지원 대상자'로 용어 통일 검토를 구하다. 또한 제5조5호 그밖에 장학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에 추가로 이사장님이나 이사회에서 인정한 학생도 추가할 수 없는지 의견을 구하다. ○○○ 이사가 5호의 '시장'은 대표성을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시장만이 인정한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다. ○○○이사가 5호는 기타 조항으로 조례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조례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 이사가 장학사업 수혜자를 선발하는 과정의 절차가 있고, 조례와의 관계가 있으므로 개정안대로 변경하자고 말하다. ○○○ 이사가 장학대상자의 선정이 이사회 심의의결이 최종 권한인지 아니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따로 받는지를 묻다. ○○○ 이사가 장학대상자 최종 선정은 이사회에서 사업계획을 승인을 통해서 장학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고 사무국에서 장학생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선발하는 것이고, 5호는 기타 조항으로서 1호에서 4호까지 외에 시정책, 민간기탁금사업 등 추가로 장학사업 추진되어야 할 경우 이사회에서 심의의결 후 이를 시에서 승인하여 사업이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의미라고 말하다.

이사장이 정관 일부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31호 정관 일부 개정에 관한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132호 장학사업 운영 규정 개정에 관한 건

이사장은 제132호 장학사업 운영 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 부장이 제132호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및 정관 일부 개정이 되어 그와 관련하여 서울장학재단 장학사업 운영 규정 제1조와 제5조의 개정을 설명하다.

○○○ 이사가 제3조에서 용어를 지원대상이라고 표기 되어 있으나 정관 제5조에서는 법인의 공여이익의 수혜자의 용어와 통일이 필요하다고 말하다. ○○○ 부장이 정관의 경우 교육청의 정관 표준안 조항에 따라 정관을 수립하였고, 용어 변경에 관련하여서는 교육청과 협의 하여 수정이 가능한지 한번 문의해 보겠다고 답하다. 이사장이 사무국에 위임을 해주시면 사무국에서 용어의 정리를 교육청과 협의 하겠다고 말하다.

○○○ 이사가 조례 개정 내용 중 지원 대상에서 서울시민 자녀라고 되었는데 부모님이 없는 학생들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폭넓게 인정해야 하며, 향후 조례 개정 시 이러한 사항을 조문에 명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다. 이사장이 추후 조례개정 시 사무국에 명확한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여 반영 할 것을 요청하다.

이사장이 장학사업 운영 규정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32호 장학사업 운영 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133호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건

이사장은 제133호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 부장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종합개선과 관련하여 이사회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설명하다. 시민 또는 작업자의 안전·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이사장이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33호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134호 사무위임전결규정 개정에 관한 건

이사장은 제134호 사무위임전결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 부장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종합개선과 관련하여 사무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고자 설명하다. 공사 감독 업무의 위탁 계약 체결 시 신규 계약 및 갱신 계약 모두 이사장의 결재를 득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이사장이 사무위임전결규정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34호 사무위임전결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135호 인사규정 개정에 관한 건

이사장은 제135호 인사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 부장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종합개선과 관련하여 인사규정을 개정하고자 설명하다. 인사규정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 중 위법·부당 계약의 징계 개정에 대해 설명하다.

○○○ 이사가 징계의 기준이 현재의 징계 기준보다 완화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한다. ○○○ 이사는 오히려 개정안이 더 강화 되었다고 말한다. ○○○ 감사가 서울시에서 내려진 가이드라인은 위

법·부당한 계약 적발 시 엄격하게 처벌을 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적발을 분할해서 징계를 하는 것은 좋으나 이미 현행 규정이 개정안보다 더 엄격하기 때문에 적발을 분할해서 개정을 한다면 1회 적발 시 감봉이상, 2회 적발 시 정직 이상, 3회 이상 해임 이상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 같다고 말한다. ○○○ 이사가 ○○○ 감사의 의견에 동의를 하며, 중대한 위법·부당 행위 시 1회에도 징계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고 말한다. ○○○ 이사가 중대한 부당행위가 위법한 행위를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 이사가 내부 징계를 한다는 의미라 중대한 부당행위는 위법한 계약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하며 서울시 출연기관이라 서울시의 표준안을 따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 이사가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는 개정안에 따라 징계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갈 것이고, 지금 이 징계 개정안 문구로 충분하고 다만, 징계 수위만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사장은 위법 부당 계약 자체 적발 시 횡수에 따라 징계사유 기준이 있고, 그런 계약이 체결되는 데 있어서 중대한 부당행위가 확인될 시 바로 해임 징계로 나눠 볼 수 있다 라고 말한다.

이사장이 1회 적발 시 감봉이상, 2회 적발 시 정직이상, 3회 적발 시 해임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징계기준은 강화하되 규정 내 틀이나 표현 자체는 서울시 기준에 따른다 라고 안건의 의견을 정리한다.

이사장이 인사규정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35호 인사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별표2>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표 중 위법·부당 계약 1회 적발 시 감봉이상, 2회 적발 시 정직이상, 3회 적발 시 해임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한다.

제136호 재무회계규정 개정에 관한 건

이사장은 제134호 재무회계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한다. ○○○ 부장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종합개선과 관련하여 재무회계규정을 개정하고자 설명한다. 재무회계규정 제36조의2 부당조건사용금지를 신설하여 외주 용역 계약 체결 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계약서류에 갑을 용어 등을 명시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설명한다.

이사장이 재무회계규정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36호 재무회계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한다.

제137호 2016년 사업 계획 및 실행예산 일부 변경에 관한 건

이사장은 제137호 2016년 사업 계획 및 실행예산 일부 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 부장이 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안건 제안 사유와 주요내용을 보고하다.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서울희망장학금 대학분야와 서울희망장학금 고교분야의 사업계획 변경을 설명하다. 푸른꿈희망장학금의 경우 (주)서울에코시티의 기부자 사정에 의한 기부 중단으로 인해 서울장학재단 사업계획에서 제외됨을 설명하다. 서울평화희망장학금은 ○○○○○○○기관과 MOU 체결을 통해 장학사업비를 지원 하고 장학생 선발 관리 및 결과보고를 받는 신규 사업을 설명하다.

이사장은 서울희망장학금 대학분야에서 2분위로 소득분위를 낮춰서 예산 불용이 되지 않는지를 묻는다. ○○○ 부장이 현재도 3분위는 소수가 장학생으로 선발되고 있으며, 지역이 확대되다 보니 더욱더 3분위는 장학금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하다. 이사장은 ○○○ 부장의 말에 동의하며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진행을 하도록 요청하다. ○○○ 이사는 선발대상 범위에 관한 용어를 정관과 통일이 되도록 요청하다. 또한 서울평화희망장학금처럼 외부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을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하다. ○○○ 이사가 서울평화희망장학금의 장학사업 절차가 중요하다고 말하다. 서울장학재단이 지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선발·관리 과정에서의 서울장학재단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하다. ○○○ 이사가 서울평화희망장학금 선발과정에서 서울장학재단이나 장학생선정위원회가 참여한다는 내용은 사업계획서에 필히 들어가야 되며, 향후 MOU 체결에서도 그 부분은 정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다. ○○○ 이사가 ○○○○○○○기관과 서울장학재단이 서로 협업을 통해 선발절차에서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생선정위원회의 역할이 들어가게끔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다. 이사장이 선발 이후에 장학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를 ○○○ 이사에게 묻다. ○○○ 이사가 재단에서는 ○○○○○○○기관에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집행할 수 있게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선발 절차에 서울장학재단의 역할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다.

○○○ 부장은 서울희망장학금 고교분야와 서울평화희망장학금 신규 사업의 예산 변경, 푸른꿈희망장학금 사업 중단으로 인하여 2016년 서울장학재단 실행예산 세입 세출부문 총액을 당초 12,779,883천원에서 12,757,594천원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말하다.

이사장이 서울평화희망장학금은 장학생 선발 시 서울장학재단 장학생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발하도록 사업계획 수정 안건의 의견을 정리하다.

이사장이 2016년 사업 계획 및 실행예산 일부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 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37호 2016년 사업 계획 및 실행예산 일부 변경에 관한 건은 서울희망장

학금 대학분야의 사업변경 서울희망장학금 고교분야, 푸른꿈희망장학금사업 중단의 원안의결과 서울평화희망장학금 사업계획을 수정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이사장은 이상으로서 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2016년 10월 5일